

제3절 안전도 정보

1.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⁹⁾ 및 준사고¹⁰⁾ 발생 현황

- ❖ 2017년에는 항공기사고·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8년은 사고 2건, 준사고 1건, 2019년에는 사고 3건, 준사고 3건으로 증가하였음.
- ❖ 2020년은 전년 대비 사고, 준사고 2건씩 감소하여 각 1건 발생하였음.

〈표 1-73〉 국적항공사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사고	0	0	2	3	1	6
준사고	2	0	1	3	1	7
총 계	2	0	3	6	2	13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국내 취항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

-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안전도 정보 주요 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 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IASA 항공사 안전등급 및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임.

9)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0) 항공안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함.

- ❖ 이와 함께, 외교부에 지정한 여행금지국가(경보단계)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가.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CMA)

- ❖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 시행을 통해 ICAO 회원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 자격 및 항공안전 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상시로 평가하고 있음.
 - ▶ USOAP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운항, 정비, 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 USOAP-CMA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2020년 기준, ICAO 지정 안전우려국은 8개 국가이며 아이티와 키르기스스탄이 ICAO 안전우려국에서 제외됨.
 - ▶ ICAO 지정 안전우려국 2018년 기준 4개에서 2019년 카리브 제도 5개 국가와 2020년 파키스탄이 안전우려국에 추가됨.

〈표 1-74〉 ICAO 지정 안전우려국(2020년 기준)

구분	해당국가
안전우려국(8개국)	부탄, 에리트레아, 안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키스탄

자료: ICAO 홈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pages/usoap-results.aspx> (2021.02.15. 검색)

나.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 국제항공안전평가(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IASA)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임.
 - ▶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IASA의 주요 평가기준임.
 - ▶ 평가 결과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공동운항(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부과됨.
- ❖ 2020년 12월 기준, 코스타리카가 1등급으로 복귀하고, 동카리브 국가기구 국가들과 파키스탄이 2등급에 추가됨.
 - ▶ 2등급 국가의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하는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이며, 국내 취항 항공사는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말레이시아항공, 에어아시아엑스 등임.

〈표 1-75〉 FAA 항공안전평가 결과(2020. 12. 기준)

등급	해당국가
1등급 (79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등급 (8개국)	방글라데시, 큐라소, 가나, 말레이시아, 동카리브 국가기구(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태국

자료: FAA 홈페이지, <https://www.faa.gov/about/initiatives/iasa/> (2021.02.15. 검색)

다.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는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 * Annex A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소속 항공기들은 EU 지역 내 운항 금지
- * Annex B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EU 지역 내 운항 허가

- ❖ 2020년 EU 블랙리스트 Annex A에는 16개국 등록 항공사(일부 제외) 및 6개 개별 항공사가 포함됨.

〈표 1-76〉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A(2020. 12. 기준)

구분	블랙리스트 항공사
국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TAAG Angola Airlines 및 Heli Malongo 2개사 제외), 아르메니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리비아, 몰도바(Air Moldova, Fly One 및 Aerotranscargó 3개사 제외), 네팔,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수단 등 16개국에 등록된 항공사
개별 항공사	Avior Airlines(베네수엘라), Iran Aseman Airlines(이란), Iraqi Airways(이라크), Blue Wing Airlines(수리남), Med-View Airlines(나이지리아), Air Zimbabwe(짐바브웨) 등 6개 항공사

자료: EU 홈페이지,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air/safety/air-ban/search_en (2021.02.15. 검색)

- ❖ 2019년 EU 블랙리스트 Annex B에서 변동 사항 없으며 3개국 3개 항공사의 일부 기종의 운항이 제한됨.

〈표 1-77〉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B(2020. 12. 기준)

구분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북한	Air Koryo	TU-204를 제외한 모든 기종
이란	Iran Air	F100, B747 기종
코모로스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를 제외한 모든 기종

자료: EU 홈페이지,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air/safety/air-ban/search_en (2021.02.15. 검색)

라. 항공안전등급 현황(ICAO, FAA, EU)

❖ ICAO 항공안전평가, FAA의 항공안전평가, EU의 블랙리스트 결과는 <표 1-74>와 같음.

- ▶ FAA 항공안전평가 2등급 항공사 중 국내 취항하는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이며, 국내 취항 항공사는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말레이시아항공 및 에어아시아엑스가 취항 중에 있음.
- ▶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중 ICAO 안전우려국을 국적으로 하거나, EU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없음.

<표 1-78> 항공안전등급 현황(2020. 12. 기준)

국가	ICAO우려국 '20 기준 (8개국)	FAA 2등급 '20. 12. 기준 (7개국)	EU블랙리스트 '19. 12. 기준 (16개국)	비 고
가나		●		
나이지리아			◎*	Med-View Airlines
네팔			◎	
동카리브 국가기구	○ (5개국)	●		동카리브 국가기구 회원국 중 앤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도미니카(FAA에만 포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라이베리아			◎	
리비아			◎	
말레이시아		●		
몰도바			◎	Air Moldova, Fly One, Aerotranscargo 3개사 제외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	Avior Airlines
북한			△	고려항공 TU-204 제외 운항제한
상투메프린시페			◎	
수단			◎	
수리남			◎*	Blue Wing Airlines
시에라리온			◎	
아르메니아			◎	

국가	ICAO우려국 '20 기준 (8개국)	FAA 2등급 '20. 12. 기준 (7개국)	EU블랙리스트 '19. 12. 기준 (16개국)	비 고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	
앙골라			◎	TAAG Angola Airlines 및 Heli Malongo 2개사 제외
에리트레아	○		◎	
우루과이				
이라크			◎*	Iraqi Airways
이란			◎*/△	◎: Iran Aseman Airlines, △: Iran Air F100, B747 기종 운항제한
적도기니			◎	
지부티			◎	
짐바브웨			◎*	Air Zimbabwe
코모로스			△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 제외 운항제한
콩고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큐라소		●		
키르기스스탄			◎	
태국		●		
부탄	○			
파키스탄	○	●		

주: ◎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항공사의 모든 기종에 대해 EU운항 제한
 △ EU내 제한적 운항 허용(특정 항공사의 일부기종은 운항 허용)
 * 국가가 아닌 개별 항공사가 EU 블랙리스트 Annex A에 해당하는 경우임